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4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1.2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17.12.4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

### 가. 제안이유

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의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 안에 명시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관리·운용 내용의 범위 확대(안 제4조제3항)

2)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(안 제4조의2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, 기금의 관리·운동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